

添附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제2 조 (목적)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 1.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.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3. 전기회로 개폐,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4.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5.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6.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7. 금속탱크, 저장조 및 유사 용기 제조업 8.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9.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10.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11.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12. 전동기,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3.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 장치 제조업 14. 선박 건조업 15.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16. 송전 및 배전업 17.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18.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19. 전기 및 통신 공사업 20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21.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2. 부동산 임대업 23. 선박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4. 선박 수리업 25. 선박배관 설치공사업 26. 증류기,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7. 산업용 로봇 제조업 28.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.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	제2 조 (목적) 1 ~ 27. 좌동 28. 기계 및 장비 중개업 29. 전기·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30.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1.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	- 신규사업 영 위를 위한 사업 목적 추가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제37 조 (이사의 의무)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,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.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④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제38 조 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. (조항 신설)	제37조(이사의 의무), 제38조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 좌동 제38조의2 (이사의 책임감경) ① 회사는 이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, 그 이사가 해당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독립이사의 경우에는 3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. ②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및 상법 제397조(경업금지),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, 제398조(자기거래)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	- 우수 인재의 임원 취임 기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고,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임감경 제도 적용 적용 (상법 제 400조 2 항)